

## 1.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상품의 (간이)투자설명서, 핵심(요약)상품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서는 금융상품의 (간이)투자설명서, 핵심(요약)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증권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적용
발생가능한 불이익	<p>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요건 충족 시 ①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li> <li>- 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외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 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상품위험등급	<p>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 위험등급을 필히 확인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유의사항	<p>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정한 날짜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 개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p>				
상담 & 민원	<p>상품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a href="https://www.kakaopaysec.com">https://www.kakaopaysec.com</a>) &gt;&gt; 고객센터 &gt;&gt; 소비자보호포털 &gt;&gt; 민원접수</li> <li>-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TEL : 1600-8515)</li> </ul>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은 일정요건 충족 시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sup>1)</sup>

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

1)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 **세액공제** :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에서 13.2%<sup>1)</sup> 또는 16.5%<sup>2)</sup> 세액공제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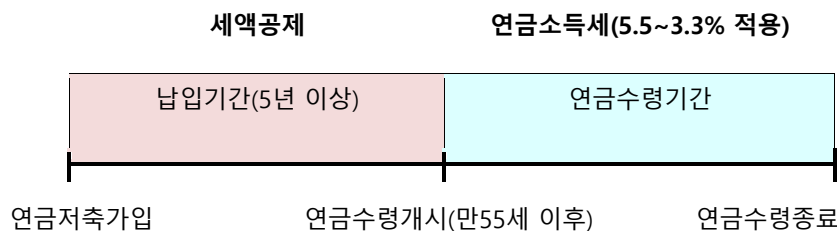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금수령 요건**(연금소득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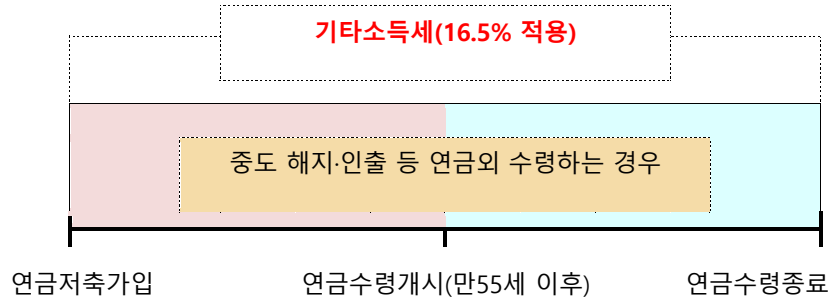
1)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

2)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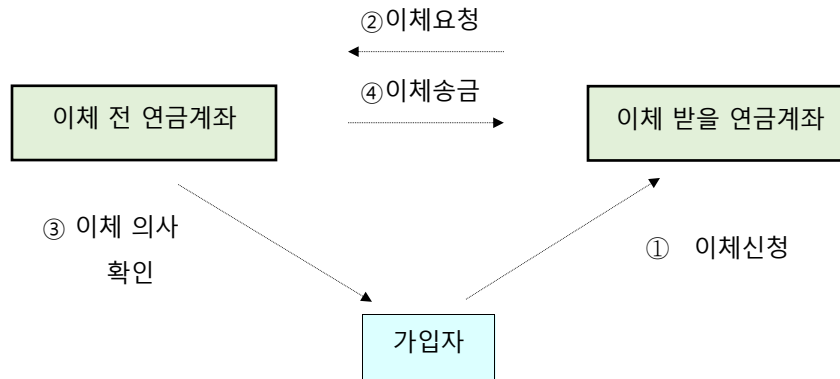


□ **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sup>1)</sup> 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세 적용대상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



□ 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핵심설명서는 연금저축 핵심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약관 등을 확인바랍니다.

## 2.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 연금저축계좌</li> <li>□ 상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li> <li>-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이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5.5~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연금계좌 상호간 이체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 중도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음</li> </ul> </li> </ul>								
계좌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중개계약</li> <li>- 증권사, 은행, 보험사 통해 가입</li> </ul> </li> </ul>								
가입 대상	만 17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주식약정 및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만 19세 이상)								
납입 한도	<p><b>연간 1,800만원<sup>1)</sup> +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sup>2)</sup> + 주택차액<sup>3)</sup> + 부동산차액<sup>4)</sup></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금융회사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 연금저축계좌 합산</li> <li>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li> <li>3)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60세 이상 가입자가 주택거래로 발생한 차액을 생애 누적 1억원 한도로 하여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li> <li>4)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주택차액과 합산 생애 누적 1억원 한도)</li> </ol> <p>※. (참고)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p> <p style="padding-left: 20px;">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p>								
세액 공제	<p><b>연간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 ISA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style="width: 40%;">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th> <th style="width: 30%;">세액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td> <td rowspan="2">600만원</td> <td>16.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 <td>13.2%</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2년 이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300만원 또는 400만원</li> <li>2) '23년 이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600만원으로 인상</li> </ol>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1호

(심의일:2025.10.24)

<p>운용 방법</p>	<p>□ 연금저축계좌 :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후 투자 가능 - 연금저축 전용펀드, ETF(인버스/레버리지 금지), 상장리츠에 한하여 편입 가능</p>
<p>보수 및 수수료</p>	<p>개별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 참고</p>
<p>계좌 이체</p>	<p>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종류(신탁, 펀드, 보험)간의 이체도 가능하며,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li> <li>① 연금계좌('01.1월 이후 개설)에서 타 연금저축계좌('13.3월 이후 개설)로의 전액이체</li> <li>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IRP로 전액이체</li> <li>③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li> <li>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li> </ul> <p>※ 상장리츠 배당·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시 계좌이체 제한 ※ 주택차액 및 부동산차액 전용 연금계좌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 이체 제한</p>
<p>계좌 승계</p>	<p>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함</li> <li>-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li> </ul>
<p>연금 수령</p>	<p>□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5년 경과요건 미적용)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 주기,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 -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음</p> <p>□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이란 매년 연금수령한도(세전금액) 이내에서 인출을 의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에 해당</p>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frac{120}{100}$ <p>1)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해는 연금지급기준일 평가액이며, 다음해부터는 1월1일 평가액 2)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 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p>

## 중도 인출

- 일반 인출**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다**나,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
  - 신청시기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
  -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부득이한 사유	인출한도
천재지변	X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X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O <sup>1)</sup>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O <sup>1)</sup>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X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X

- 1) 아래 3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②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 x150만원
  - ③ 200만원

## 적용 세제

-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외수령** 하는 경우, **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
- 연금저축계좌의 **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 필요**
-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자금 인출순서

- 인출 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대상(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
- (참고)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
  - 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ISA 전환금액 제외)
  - 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된 금액
  - ③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 ④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p>연금 수령 세제</p>	<p>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                  ③ 과세대상소득 : 연금소득세(3.3%~5.5%)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418 394 1485 577">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확정형연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이 (연금수령일 현재)</td> <td>만 70세 미만</td> <td>5.5%</td> </tr> <tr> <td>만 80세 미만</td> <td>4.4%</td> </tr> <tr> <td>만 80세 이상</td> <td>3.3%</td> </tr> </tbody> </table> <p>※ 연간 연간소득금액(공적연금 제외,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 사유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p>	구분		확정형연금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구분		확정형연금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p>연금외 수령 세제</p>	<p>①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③ 과세대상소득 : 기타소득세 16.5% 적용</p>																				
<p>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360 850 1307 1318"> <thead> <tr> <th></th> <th>연금계좌</th> <th>연금수령</th> <th>연금외수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과세제외 금액</td> <td>당해연도 납입금액 (①)</td> <td rowspan="4">과세제외</td> <td rowspan="4">과세제외</td> </tr> <tr> <td>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②)</td> </tr> <tr> <td>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③)</td> </tr> <tr> <td>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④)</td> </tr> <tr> <td>이연퇴직 소득</td> <td>이연퇴직소득 (⑤)</td> <td>퇴직소득세의 60~70%</td> <td>퇴직소득세</td> </tr> <tr> <td rowspan="2">과세대상 소득</td> <td>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⑥)</td> <td rowspan="2">연금소득세 (5.5~3.3%)</td> <td rowspan="2">기타소득세 (16.5%)</td> </tr> <tr> <td>연금계좌의 운용소득(⑦)</td> </tr> </tbody> </table>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p>		연금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제외 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 (①)	과세제외	과세제외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②)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③)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④)	이연퇴직 소득	이연퇴직소득 (⑤)	퇴직소득세의 60~70%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⑥)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운용소득(⑦)
	연금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제외 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 (①)	과세제외	과세제외																		
	당해연도 ISA 전환금액 (②)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③)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④)																				
이연퇴직 소득	이연퇴직소득 (⑤)	퇴직소득세의 60~70%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⑥)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운용소득(⑦)																				
<p>가입자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연금수령 이외의 방법(중도해지 포함)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출금가능금액 중 과세대상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앱 출금 가능(고객센터 유선출금은 전액 가능)</li> <li><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 요청 시 인출 금액은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로 입금됩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수익율, 수수료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신청으로 타 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IRP 등)에서 이전 및 ISA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 신청 후 입금할 경우 이미 입금된 일반 금액과 구분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및 만기ISA 전환신청 시점에 입금전용계좌가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입금전용계좌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input type="checkbox"/> 입금 가능 자금, 계좌 정책, 투자가능상품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 연금저축계좌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11호

(심의일:2025.10.24)

예금자 보호	보호	<input type="checkbox"/> 이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잔액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보호	<input type="checkbox"/>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통지/알림 안내	<input type="checkbox"/> 통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수익율 보고서 안내 : 이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 알림이 불가할 경우 서면, SMS, 전자문서 중 발송</li> </ul> </li> <li>- 연말 입금 시간 안내 : 카카오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톡 알림이 불가할 경우 앱 푸시, SMS 중 발송</li> </ul> </li> <li>- 기타 주요 내용 통지/알림 : 앱 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 푸시 알림이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 SMS 중 발송</li> </ul> </li> <li>- 연금저축계좌 ETF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신청, 체결내역 안내 : 종합계좌 상품설명서 또는 국내/해외 주식 거래설명서의 [매매명세통지알림]에 따름</li> </ul>															
	<input type="checkbox"/>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시 알림 및 카카오톡 차단,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안내 없이 발송매체가 변경되거나, 알림의 발송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전 안내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단말기의 환경 및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상태에 따라 알림 발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 안내의 목적(불공정거래 관련 안내,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통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통지 등)으로 등기 발송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될 수 있습니다.</li> <li>- 연금저축계좌 및 매매거래설정 약관, 수수료 등 주요 내용 변경 시에는 카카오페이 앱 푸시(Push), 알림톡(카카오톡), SMS,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li> <li>-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고객센터 ☎ 1600-8515)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위법계약해지권</th> <th>청약철회권</th> <th>자료열람요구권</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 할 수 있는 권리</td> <td>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td> <td>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td> </tr> <tr> <td>신청방법</td> <td>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gt; 소비자보호포털 &gt; 공시/안내 &gt; 금융소비자보호법 &gt; 위법계약해지권)</td> <td></td> <td>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gt; 소비자보호포털 &gt; 공시/안내 &gt; 금융소비자보호법 &gt; 위법계약해지권)</td> </tr> </tbody> </table>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법계약해지권)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법계약해지권)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 위법계약해지권)													
※ 연금저축계좌의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소비자권리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예방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2.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3.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입금전용계좌 설명서

### □ 입금전용계좌 목적

#### 1. 연금 이사오기(수관)

- 연금계좌 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관기관<sup>1)</sup>에서 납입한 과거 연도별 납입내역 및 인출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관기관<sup>2)</sup>에서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수관기관에서 위 정보를 연금저축계좌에 등록하기 전 이체금액이 입금될 경우,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지 않고, 당해연도 납입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이체금액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카카오페이증권은 연금계좌를 이체 받을 때,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1) 이관기관: 이체 하는 금융회사 2) 수관기관: 이체 받는 금융회사

#### ※ 연금 이사오기 신청 시 입금전용계좌 개설 절차

타 금융회사에서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연금계좌 이체 신청 →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이체 신청 접수 및 입금전용계좌 개설 → (연금저축계좌) 과거 납입내역 및 인출내역 등록 → (입금전용계좌) 타 금융회사로부터 이체 입금 → 연금저축계좌로 대체 입금 → 수관 완료

## 개설 목적

#### 2. 만기 ISA 가져오기

- 만기 해지 된 ISA 금액을 연금계좌로 가져오기 신청 시 추가 세액공제<sup>1)</sup>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입금<sup>2)</sup>과 구분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ISA 전환금액<sup>3)</sup>을 일반 입금으로 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당해연도 납입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ISA 전환금액의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유로 **카카오페이증권은 만기 ISA 전환금액을 입금 받을 때,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1) 추가 세액공제 : 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2) 일반 입금 : 기본 세액공제(연 600만 원, '25년 기준)를 적용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3) ISA 전환금액 : 만기 해지된 ISA 수령금액 중 연금계좌에 입금할 금액(ISA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가능)

#### ※ 만기 ISA 가져오기 신청 시 입금전용계좌 개설 절차

카카오페이증권에서 만기 ISA 가져오기 신청 → 입금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계좌) ISA 전환금액입금 → 연금저축계좌로 대체 입금 → ISA전환금액 입금 완료

## 가입자 유의사항

- 개설 및 해지
  - 카카오페이증권 연금저축계좌로 타 금융회사의 연금계좌 이체신청 or 만기 ISA 가져오기 신청 시 카카오페이증권 입금전용계좌가 자동개설 됩니다.
  - **개설 후 연금계좌 이체 및 ISA 전환입금이 완료되어도 입금전용계좌는 유지되며,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입금전용계좌는 자동해지 됩니다.**
- 입출금 기준
  - 타 금융회사로부터 이체금액, 만기 ISA 전환금액 입금 및 연금저축계좌로 대체입금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연금 이사오기 및 만기 ISA 가져오기 신청 중이 아닌 경우 입출금 불가합니다.
- 기타
  - 입금전용계좌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 입금전용계좌에서 예탁금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종합계좌로 지급됩니다.
  - 거래내역 및 계좌증명서 발급은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1600-851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